

제 1446 호
1989. 8. 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공 보 관 반 중 남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방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교육조례
제249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소속지방교육직공무원의인용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 3
- 규 칙
제2294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4
제2295호: 서울특별시석유판매업사무처리규칙제정규칙 9
- 규 칙
제341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
규칙개정규칙 9
(이면계속)

이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평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예 규	
제514호 : 서울특별시제비지관리및처리분규정증개정규정	11
● 고 시	
제362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고시	14
제367호 : 쇄고기연동가격고시	14
제368호 : 사료성분등록고시	14
● 공 고	
제639호 : 등급표시금지처분공고	14
제648호 : 관인제교부공고	15
제652호 :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15
제653호 : K.S표시허가입제허가취소	16
제654호 : 판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람공고	16
제662호 :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6
제665호 : K.S표시금지처분공고	17
제658호 : 관인제교부공고	17
제659호 : 관인제교부공고	19
● 구 고 시	
제 3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
제11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
제14호 :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20
제76호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경류장,학교운동장,공공행사,가스공급설비, 도로지적승인)고시	20
● 구 공 고	
제51호 : 관인개각공고	22
제72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에따른공람공고	22
제205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3
제219호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	23
● 사업소고시	
제17호 : 하천점용허가	24
● 사 령	

교육조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7.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조례제249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전직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신규임용" "신규채용"으로 하고, 두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은 동일 직명에 한하여 전보 임용 할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전·출입 임용 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1항중 "각구구분 및 직명별"을

"직명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제1항의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별도 두되,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임산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종·직명및근무상한연령표

정 노 쿠	근 무 상 한 연 령
사 환	58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건호

◎서울특별시규칙제2294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공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5호, 제6호 제6-2호 및 제7호의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환경변경등 공원점용허가'를 '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환경변경, 점용 또는 녹지의 이용허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공원조성'을 '공원 및 녹지의 설치'로 한다.

제11조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서식]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6-2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거 제7호의3서식]			
도시계획사업(녹지의설치)허가증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녹지의종류 및 사업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 칭			
사업 시행 면적 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장 연월일		착공 19 (일간) 준공 10	
사 업 제 목		별 침	
조 건			
<p>도시공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장 ㉞</p>			

[별지 제7호의4서식]

녹지이용허가증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녹지이용유형 및 위치				
허가사항	이용목적			
	장소 및 면적			
	시설 규모			
	기간			
조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 합니다.

18

서울특별시장 ㉔

<p>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사무처리 규칙에 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8.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고 권</p>	<p>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7. 2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p>
---	--

◎서울특별시규칙제2295호

서울특별시석유판매업사무처리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1809호 서울특별시석
유판매업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그 소속기관에

◎교육규칙제341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그소속기관에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소속기
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총 합 표

총 계	6,827
별정직계	6
비상계직원(5상당)	1
속 기 사(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6급상당)	1
전산처리사(7급상당)	2
사 진 사(7급상당)	1
전산처리사(8급상당)	-
3급 내지 9급 계	1,996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서기관	13
지방의무기감	8
지방행정사무관	11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방사서관	22
지방의무기록	7
지방보건의료기록	2
지방전기기록	1
지방교육기록	1
지방건축기록	4
지방행정주사	628
지방행정주사 또는 행정직 8급 상당	2
지방사서	50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건축기사	23
지방전기기사	5
지방기계기사	6
지방교육기사	8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1
지방행정주사보	376
지방사서보	88
지방전산처리사보	4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교육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83
지방행정서기	334
지방사서서기	79
지방전산처리원	13
지방건축기원	6
지방교육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전기기술보	-
기 능 직	4,822
지방통신장(6등급)	1
지방전기장(6등급)	4
지방기계장(6등급)	12
지방기계장(7등급)	39
지방전기장(7등급)	8
지방통신장(7등급)	5
지방기계원(8등급)	-
지방전기원(8등급)	-
지방기계원(9등급)	-
지방조무원(9급)	-
지방통신원(10등급)	3
지방전기원(10등급)	34
지방기계원(10등급)	68
지방운전원(10등급)	494
지방교환원(10등급)	18
지방농림원(10등급)	13
지방보건원(10등급)	12
지방간호조무원(10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2,875
지방방호원(10등급)	1,232
고 용 직	3
예 규	
<p>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증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7. 3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고 건</p> <p>◎서울특별시예규제514호</p> <p>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증개정규정</p> <p>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인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급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p> <p>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제1항제2호, 제7호및 제9호에 의거 수외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p>

건축조례 및 당해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제1호중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을 서울 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별지제20호서식)”을 “(별지제20호서식 또는 별지제43호서식)”으로 하고, 한국상업은행태평로지점(시금고)을 “서울 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0일 경과시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 가산 징수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평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 가산 징수한다.

별지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제7호 서식 시장용지 입찰자격증 “도·소매업”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계약약정조항중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 기간 경과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년.월.일)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0일을 제한기간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제20호서식중 납부서한 하단에 납부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납부장소 : 서울 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별지제22호서식중 구비서류란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인계약서 1통

별지제23호서식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조건중 제5호 나목중 “금융단이 절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율로”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로 한다.

별지제3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제37호서식 제1조중 “시장법”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한다.

별지제38호서식중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서울 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39호서식중 계약약정조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평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율 가산납부 하여야 한다.

별지제43호 서식을 별지의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 43호서식>

영수필통지서 (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재무국 관제과
№	지구명
과 목	채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십억천백십만원백십원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은행 무교지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서울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협 및 우체국

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재무국 관제과
№	지구명
과 목	채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십억천백십만원백십원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은행 무교지점	
수납일부인	취급사인

납부장소: 서울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협 및 우체국

영수필통지서 (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재무국 관제과
№	지구명
과 목	채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십억천백십만원백십원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은행 무교지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수입원 출납원용)
납부장소: 서울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협 및 우체국

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재무국 관제과
№	지구명
과 목	채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십억천백십만원백십원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은행 무교지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서울시내 시중은행 또는
농·수·축협 및 우체국

제1448호

시

보

1989. 8. 1

36-13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62호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장

공 원 별	종 별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금액(원)	비 고
서울대공원	기타시설	주차장 사용	대형1회당	1,000	
			소형1회당	500	
		수화물 보관	1일1회당	300	초과 1일당 300원

◎서울특별시고시제367호

쇠고기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제도에 관한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88-24호 '88.9.14)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장

1. 쇠고기 연동가격(정육100g당) 980원
(정육500g당) 4,900원
2. 시행일: 1989. 8. 1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368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 제22조3호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장

아 래

등록번호	사료종류	업소명	소재지	성명	사료성분명칭	성분량(등록)	분자식	순도	등록일자
19-4	수입 단미사료	신한축산	서초구서초동 1538-10	구본현	광물질 첨가물	Mg: 55%	MgO	97%	89.7.10.
						이상		이상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639호

등급표시 정지 처분 공고

공장품질관리등급제 운용요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 처분하고 공고 합니다.

89. 7.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업체명: 삼진상사
 2) 대표자: 김승유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97-12
 4) 사업상품명: 기성신사복
 5) 처분사유: 동급규격매달
 6) 처분기간: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서울특별시공고제648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산하 종로구청장의 관인용

승 인 인 영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청

1. 사용계시일자: 1989.7.27
 2. 사용 및 배기 관인 내역: 따로붙임
 · 종로구청장인(호적·병사용): 일반 사무용
 · 종로구청장인(건축물대장용): 인증기용

구 인 명			신 인 명		
공인명	종로구청장인 (호적·병사용)	종로구청장인 (건축물대장용)	공인명	종로구청장인 (호적·병사용)	종로구청장인 (건축물대장용)

다 음

◎서울특별시공고제652호

부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1989. 7. 29.
서울특별시청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봉동 주택개발재개발 금호1구역 1지구
 2. 면 적: 21,066㎡
 3. 주택명(아파트명): 성동구 용봉 2차 대림아파트
 4. 규 모: 아파트 13-15층 3동 410세대(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제외)
 5. 사업주체: 주택개발재개발 금호1구역1지구 재개발조합

●서울특별시공고제653호

K·S 표시허가 업체 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9조 제1항 제4호 사독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
다 음

- 1) 업체명 : (주)청자표 생크
- 2) 대표자 : 이종석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13-43
- 4) 규격명 : 가정용 주방용구
- 5) 처분사유 : 무단폐업

●서울특별시공고제654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변경 지정'공람공고

- 1.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 정지증 반포, 압구정 지구내 일부환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 인가 및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요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3조, 제47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공람합니다.
- 2. 환지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은 서울

○도시계획안

분	시	현	명	위	치	규	모	비	고
기	경	도	도	우	이	동	산	58-1~	산58-2
변	경					B=6M	L=35M		
									매 지

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환지변경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나 미수령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9. 8. 1.

서울특별시 장

가. 환지계획변경 개요

- 사업명 :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 위 치 : 서초구 반포, 잠원, 서초동 일부 강남구 압구정, 신사동 일부
- 대 상 : 36필지
- 면 적 : 11,084.8평

●서울특별시공고제662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아래 도시 계획시설(도로, 하천, 주차장, 쓰레기및 오물처리장)입안에 나른 도시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2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람기간 : 89. 8. 2 - 89. 8. 16. (14일간)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리과

1989. 8. 2.

서울특별시 장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고
신설	하천	수유동 279-143~수유동 535-244	B=10M, L=1,000	대동천
기정	주차장	쌍문동 69-23	1,174㎡	
변경	"	"	"	폐지
기정	소매기포 유출지막장	미아동 776-14	198㎡	
변경	"	"	"	폐지

◎서울특별시공고제665호

K·S 표시 정지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9. 8. 5.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업체명: 신진밸브공업(주)
2. 대표자(관리인): 박 춘현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8
4. 규격번호: KSB 6405
5. 규격명: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6. 종규, 등급: 온수용 방열기 밸브
7. 표시정지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처분사유: K·S규격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658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산하 영등포구청장의 관인용 판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판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7.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1989. 8. 1.
2. 승인 및 폐기관인 내역: 따로붙임 (승인인영)

- 영등포구청장인(선거사무용1)
- " (선거사무용2)
- " (선거사무용3)
- " (선거사무용4)
- " (선거사무용5)
- " (선거사무용6)
- " (선거사무용7)
- " (선거사무용8)
- " (선거사무용9)

(폐기인영)

- 영등포구청장인(국민투표, 선거용1)
- " (국민투표, 선거용2)
- " (국민투표, 선거용3)
- " (국민투표, 선거용4)
- " (국민투표, 선거용5)

승 인 인 영			
구 분	영등포구청장인	영등포구청장인	영등포구청장인
구 인 영 (폐기인영)	 (국민투표, 선거용1)	 (국민투표, 선거용2)	 (국민투표, 선거용3)
	 (국민투표, 선거용4)	 (국민투표, 선거용5)	-
신 인 영 (재교부인영)	 (선거사무용1)	 (선거사무용2)	 (선거사무용3)
	 (선거사무용4)	 (선거사무용5)	 (선거사무용6)
	 (선거사무용7)	 (선거사무용8)	 (선거사무용9)

◎서울특별시공고제C59호

관 인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산하 강동구청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
 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부함을 통 규
 정 제9조 및 통 규칙 제8조에 의거함

공고합니다.

198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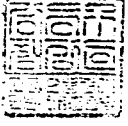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1989. 8. 1.

2. 사용관인내역: 아래붙임

- 강동구청장인(하일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 " (상일동 ")
- " (명일1동 ")
- " (명일2동 ")
- " (고덕1동 ")
- " (고덕2동 ")

승 인 인 영

관 인 명	강 동 구 청 장 인	강 동 구 청 장 인	강 동 구 청 장 인
신 조 인 영	 (하일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상일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명일1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신 조 인 영	 (명일2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고덕1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고덕2동 중계민원 사무전용임)

구 고 시

◎마포구청고시제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32조의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8.

마 포 구 청 장

정류장, 학교, 운동장, 공용의청사, 가스공급설비(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각안과 같이 시행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8. 2.
---	--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지적승인 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구로구 은수동 60일대	5,880	새풍운수
변경	"	6,330	"
신설	구로구 가리봉동 29-6일대	3,666	풍기운수

나.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구로구 시흥동 산126-1일대	13,300	○신흥국교설립예정지 ○도면정정 없이
변경	학교	구로구 시흥동 산126-12일대	13,292.60	면적정정(감7.4㎡)
기정	학교	구로구 궁동 230번지일대	70,557	우신중교교
변경	학교	"	67,815	(감)2,742

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학교, 가스공급설비, 공용의청사,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운동장	구로구 고척동 63-6일대	96,640	(감 37,620)
변경	"	구로구 고척동 63-6일대	59,020	
신설	학교	구로구 고척동 66-7일대	26,570	(중, 교교)
기정	가스공급설비	구로구 고척동 66-12일대	11,435	
변경	"	"	10,503	(감 912)
신설	공용의청사	구로구 고척동 66-2일대	5,190	소방서: 3,306㎡ 세무서: 1,884㎡
신설	도로	구로구 고척동 66-7 고척동 631-18	폭 15m 연장570m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구 공 고

◎동대문구공고제51호

관 인 개 각 공 고

동대문구 산하 장안 제2동의 동장 관





3. 인 영

인 및 계인을 개각 사용 승인 하였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인 규칙 제8조
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89. 7. 28.

동 대 문 구 청 장

1. 관인명 : 장안제2동장인 관인 및 계인(민원 사무 전용)
2. 관인 사용 개시일 : 1989. 8. 1.

구 분	개 각 인		계 기 인	
	직 인	계 인	직 인	계 인
인 영				

◎구로구공고제72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에 따른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972호(88. 12. 12.)로 시설변경 결정 및 동고시 제1036호(88. 12. 28.)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시행자의 학교시행 허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 및 토지조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별도 개별공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989. 7. 20.

구 로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사업(학교) - 한국여자상업학교
- 나. 시행지-구로구 당동 107-5번지의 24필지
- 다. 시행규모 - 부지면적 17,924㎡
- 건축면적 1,141.68㎡
- 건축연면적 6,544.28㎡
- 라. 시행자 : 강서구 화곡동 477-1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장
- 마.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조서(생략)
- 바.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생략)

사. 공람기간: 1989. 7. 20-89. 8. 3(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경비과

자.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노원구공고제20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가. 사업개요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문으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시는 노원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노 원 구 청 장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 모	사 업 기 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공릉동	공통2등 339 - 341간 포장공사	B=8m L=35	인가일로부터 89. 12. 31까지	서고시제60호 (74. 5. 11)	서고시제60호 (74. 5. 11)
"	공릉2등 240 - 248간 도로 개설공사	B=8m L=190	인가일로부터 89. 12. 31까지	"	"
상계동	상계2등 185 - 320간 도로 개설공사	B=8m L=120	인가일로부터 89. 12. 31까지	"	"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사. 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공고제219호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소는 89년도 정기검사를 미필하고 무단 폐업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41조의2규정에 의거 주택자재 생산업을 등록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1989. 7.
도 봉 구 청 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제 지	등록품목	사 유
7-112	변동전계	한 충 용	변동 510	기 와	정기검사미필무단폐업
7-185	조영기와	김 영 조	창동 304	기 와	"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17호

하 천 점 용 허가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89. 8. .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 용 독 적	점용기간	허가할 받은자	
						주 소	성 명
'89.8.3	송파구 풍납 동 121-4번 지선(한강)	하천	1,200㎡	수상스키장 바지 선전조를 위한 일시작업장	'89.8.3- 1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 동 89번지	(주)삼미수상 레저 대표이 사 심병철

사 령

◎1989년 7월 22일자 3급 공무원 직위해제령 제 301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 주 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89.7.22부터 '89.10.21까지 내무국대기 근무를 명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시설부기감

◎1989년 7월 25일자 4급이하 공무원 승진임용령 제 30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태 복	지방서기관 내무국 근무 증견간부과정과정('89.7.25-10.7)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양 창 모	"	"	"
정 재 완	"	"	"
김 완 일	"	"	"
박 영 환	"	"	"
박 지 병	"	"	"
이 일 성	"	"	"
고 완 기	"	"	"
이 노 근	"	"	"
홍 희 영	"	"	"

◎1989 7월 25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명세 30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봉화	노원부녀복지관장	부녀복지과	지방행정사무관
◎1989년 8월 1일자 6급기술직 공무원 파견 명세 30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성기환	내무국 정부합동민원실 파견 (‘89. 8. 1 - 91. 1. 31)	주책계량과	지방건축기사
◎1989년 7월 25일 지방별정직 7급상당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명세 30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희경	노원부녀복지관(부녀상담원) 지방별정직 8급상당	신규	
강문이	" (영양사) 지방별정직 7급상당	"	
유영현	" (훈련교사) 지방별정직 8급상당	"	
이연희	" (")	"	
김기선	" (")	"	
문미경	구로부녀복지관(유아교사)	"	
황순희	노원부녀복지관	마포부녀복지관	지방별정직8급상당
신지영	"	"	"
이순자	"	"	지방별정직7급상당
이경자	"	"	"
임춘득	"	"	지방별정직8급상당
공미화	마포부녀복지관	구로부녀복지관	"
하정애	"	"	지방별정직7급상당
지방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 의원면직 명세 30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보	원예 외하여 그 직을 면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8급상당
배화영	"	"	"
권경희	"	"	"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신규임용 명세 30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경환	경찰국면허파기체처리사 (3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지방별정직	신규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정순옥	경찰국면허과 기계처리사 (2호봉) 지방별정직 9급상당	신규	
이주창	" 전산처리사 (6호봉) "	"	
김경임	" 전산처리사 (2호봉) "	"	
양승애	" 전산처리사 (2호봉) "	"	
정미관	" 전산처리사 (9호봉) "	"	
이상연	" 전산처리사 (2호봉) "	"	
박정현	" 천공원 (4호봉) "	"	
서정현	" 천공원 (2호봉) "	"	
최영선	" 천공원 (4호봉) "	"	
홍성선	전자계산소 전산처리사 지방별정직 6급상당	"	
이영보	전자계산소 기계처리사 지방별정직 7급상당	"	
배화영	" " 지방별정직 7급상당	"	
권경희	" " 지방별정직 8급상당	"	
김태종	" " 지방별정직 9급상당	"	
안인숙	" 전산처리사 지방별정직 8급상당	"	
◎1989년 7월 25일자 8급 공무원 전출 명제 30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순애	대전직합시 전출을 명함.	자동차관리 (사)	지방행정서기
◎1989년 8월 1일자 7급 공무원 신규임용 명제 30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정영화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 근무를 명함.	신규	
발령 제 310 호			
강동구 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김동훈	
부이사관에 임함. 노원구청장에 보함		89. 7. 21	
세종문화회관장 지방부이사관		윤두영	
부이사관에 임함.			

관악구청장에 포함	89. 7. 21
노원구청장	
이사관	서 정 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지방이사관에 임함.	
새평문화회관장에 포함	89. 7. 21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행정사무원	주 정 희
서기관에 임함.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장에 포함	89. 7. 25
도시계획국 지적과	
지적기록	김 복 진
시설기정에 임함.	
도시계획국 지적과장에 포함	89. 7. 25
도시계획국 지적과장	
시설기정	김 동 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89. 7. 25
	대 통 령

1989년 8월 1일자

의료직 공무원 전보 및 파견

령제311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 급
하명주	의약과	동부병원	지방간호사
박화성	동대문구	"	"
여신자	마포구	"	"
정육춘	강 구	"	"
김규성	성동구	아동병원	"
최춘남	"	"	"
이영숙	강남구	"	"
희원	의약과	"	"
신희자	은평구	정신병원	"
노금자	용산구	"	"
이정자	서대문구	"	"
구순희	영등포구	"	"
백경애	강남구	"	"
류소관	종로구	서대문병원	"
최영자	성북구	"	"
김숙경	은평구	"	"
유계애	정신병원	서대문구	"
신용재	아동병원	영등포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자	동부병원	종로구	지방간호사
정영자	"	성동구	"
김윤자	"	중구	"
이순예	"	종로구	"
정영순	"	구로구	"
이유순	"	의약과	"
정영자	아동병원	용산구	"
이순옥	시대문병원	마포구	"
정희자	정신병원	동대문구	"
김등자	아동병원	성동구	"
김재남	동부병원	성북구	"
김순자	아동병원	은평구	"
이경주	정신병원	"	"
한상숙	아동병원	강남구	"
김은란	종로구	노원구	"
정경자	내무국	강서구	"
	시경찰국 파견	"	"
	('89. 8. 1부터 별도지시시까지)	"	"
이송자	성북구	공무원교육원	"
신홍선	중랑구	시립대학교	"
김계숙	용산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유정애	강남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최정자	영등포구	동부병원	"
이순덕	용산구	"	"
최유연	도봉구	"	"
김계자	동대문구	"	"
현명숙	중랑구	"	"
전준자	관악구	"	"
박홍심	종로구	정신병원	"
고향숙	강서구	"	"
임미숙	"	"	"
강영자	종로구	"	"
김분옥	성북구	"	"
박희옥	동대문구	"	"
서태옥	도봉구	"	"
송유자	관악구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정미	다포구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사
정유주	은평구	"	"
정영애	동대문구	"	"
정발숙	동작구	"	"
박종희	중구	"	"
장동자	구로구	"	"
김신수	강서구	"	"
오영희	송구	"	"
조영규	구로구	"	"
김숙자	구로구	"	"
임춘자	중로구	"	"
조순자	다포구	"	"
조순옥	강서구	"	"
정경란	중랑구	동부병원	"
최은희	동작구	"	"
박한우	도봉구	"	"
한영자	도봉구	"	"
이순금	송로구	"	"
이필순	성동구	"	"
이한성	성북구	"	"
조미경	구로구	"	"
한희애	중랑구	"	"
김신애	성동구	"	"
김연희	노원구	"	"
양길수	중성신병원	"	"
박순자	중구	양성병원	"
이유신	송북구	"	"
이현옥	중구	"	"
안진순	동대문구	"	"
부희임	중랑구	"	"
이미란	서문구	"	"
박은일	구로구	"	"
박일라	노원구	"	"
이종희	송북구	"	"
조종희	중랑구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종순	성북구	아동병원	지방간호사
황희정	서초구	"	"
김광욱	관악구	"	"
황영희	은평구	정신병원	"
박성숙	용산구	"	"
김광욱	은평구	"	"
박영숙	은평구	"	"
백인자	구로구	"	"
김정희	은평구	"	"
강북영	내무국	서대문병원	"
	시경철국파견	"	"
	('89. 8. 1 - 별도지시시까지)	"	"
박선애	서대문구	"	"
주춘실	용산구	"	"
강인희	정신병원	아동병원	"
오점순	은평구	정신병원	"
최인숙	동부병원	아동병원	"
이순영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
김해숙	아동병원	"	"
박경희	내무국	동부병원	"
	시경철국파견	"	"
	('89. 8. 1 - 별도지시시까지)	"	"
윤귀매	내무국	아동병원	"
	시경철국파견	"	"
	('89. 8. 1 - 별도지시시까지)	"	"
이관순	정신병원	충무구	"
이규희	정신병원	"	"
최은숙	동부병원	성북구	"
이윤진	아동병원	도봉구	"
신임진	동부병원	도봉구	"
배정희	동부병원	서초구	"
김근자	아동병원	관악구	"
이수산	서대문병원	파로구	"
박말순	동부병원	성동구	"
유순선	동부병원	도봉구	"
황순희	성북구	관악구	"
장성복	동부병원	송파구	"

성명	발행사항	현부서	직급
윤종주	동부병원	의약과	지방간호사
김양희	"	중구	"
박부순	아동병원	동대문구	"
고매경	"	관악구	"
이화경	관악구	성북구	"
장재욱	아동병원	의약과	"
원선희	"	종로구	"
김은희	서대문병원	중구	"
배경선	"	중구	"
박석자	동부병원	성동구	"
홍현숙	"	성동구	"
권희자	서대문병원	은평구	"
방영이	아동병원	구로구	"
김오선	서대문병원	은평구	"
민재식	"	은평구	"
김정순	"	마포구	"
김윤주	아동병원	구로구	"
이영자	동부병원	"	"
이조강	정신병원	"	"
임현숙	"	영등포구	"
임재숙	정신병원	동작구	"
김연희	서대문병원	동작구	"
조윤숙	"	종로구	"
유봉희	"	마포구	"
김태경	아동병원	종로구	"
송가순	정신병원	서대문구	"
이수자	"	마포구	"
오인숙	"	구로구	"
박세민	"	관악구	"
김금자	서대문병원	강서구	"
백병순	"	동작구	"
과순자	"	은평구	"
도재자	아동병원	용산구	"
안영자	"	관악구	"
정순애	서대문병원	영등포구	"
이현영	정신병원	강서구	"
정순옥	서대문병원	구로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경선	아동병원	강남구	지방간호사
강치욱	"	관악구	"
박영숙	"	영등포구	"
유승환	정신병원	서대문구	"
이인순	동부병원	공무원교육원	"
가순옥	"	종로구	"
최의숙	"	중구	"
김예경	"	용산구	"
김용숙	서대문병원	동작구	"
김인숙	정신병원	영등포구	"
최순이	동부병원	노원구	"
이경순	정신병원	마포구	"
강연자	서대문병원	은평구	"
이혜순	아동병원	"	"
강순남	"	영등포구	"
허영수	서대문병원	은평구	"
임혜영	강서구	종로구	"
한정순	"	"	"
박정인	관악구	"	"
최윤숙	구로구	"	"
최정자	도봉구	용산구	"
허유강	관악구	용산구	"
김화숙	종로구	성동구	"
강정욱	종로구	동대문구	"
김태숙	구로구	"	"
신완희	영등포구	"	"
김남식	용산구	중랑구	"
김향숙	노원구	"	"
김경자	종로구	"	"
하경숙	성동구	"	"
전계숙	종로구	"	"
신명순	서대문구	"	"
유정일	강동구	성북구	"
정순악	중랑구	성북구	"
허연자	강남구	"	"
임소영	중랑구	"	"

성명	발행사항	원부서	직급
유영순	동대문구	성북구	지방간호사
이정숙	동작구	도봉구	"
조현숙	강동구	"	"
김인순	"	"	"
김영순	구로구	"	"
김영숙	동대문구	"	"
윤영숙	구로구	"	"
장수영	도봉구	노원구	"
김수영	강동구	"	"
김홍숙	성북구	"	"
조희원	"	"	"
이원숙	동대문구	"	"
최현숙	구로구	"	"
최현숙	서대문구	"	"
김추경	용산구	"	"
김영숙	도봉구	서대문구	"
윤수연	관악구	양천구	"
이희순	은평구	"	"
박희숙	강동구	"	"
윤희숙	양천구	강서구	"
문희숙	성북구	구로구	"
문희숙	관악구	"	"
최명순	관악구	"	"
김명순	관악구	영등포구	"
김문자	노원구	관악구	"
서주희	"	"	"
장희자	"	서초구	"
양규자	"	송파구	"
김진주	"	"	"
김태자	성동구	강동구	"
최자영	중랑구	"	"
최자영	영등포구	"	"
남자영	"	"	"
박자영	구로구	"	"
임자영	구로구	구로구	"
박자영	강남구	성동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육순	동작구	성동구	지방간호사
원진희	마포구	서대문구	"
박향자	은평구	동대문구	"
박미서	도봉구	구로구	"
이경자	관악구	용산구	"
손영옥	종로구	동대문구	"
조정순	성동구	동대문구	"
최정숙	구로구	중구	"
최혜순	노원구	관악구	"
함복실	성동구	구로구	"
윤대장	관악구	의약과	지방약사
김정석	동작구	용산구	"
정기성	송파구	성동구	"
이상복	성동구	동대문구	"
조태현	중구	중랑구	"
김진수	마포구	도봉구	"
박한봉	도봉구	은평구	"
최승환	영등포구	서대문구	"
신완유	은평구	마포구	"
공상준	강남구	구로구	"
이찬수	동대문구	영등포구	"
배동수	서대문구	동작구	"
박규용	중랑구	관악구	"
강성홍	의약과	강남구	"
유홍식	구로구	송파구	"
박정숙	성북구	아동병원	"
이종각	성동구	종로구	"
전우식	종로구	성북구	"
윤화순	아동병원	동작구	"
윤인수	아동병원	서초구	"
이은정	동부병원	송파구	"
최혜숙	도봉구	서대문구	지방간호사

('89. 8. 1자)

◎1989년 7월 29일자		7급이하 공무원 징계		령제 31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귀원	지방공무원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도시개발과	지방행정주사보	
문영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	"	
김명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정직1월"에 처함.	자동차관리 사업소	지방행정서기	
◎1989년 8월 1일자		보건연구직 공무원 승진 임용		령제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남준	지방보건연구관에 임함. 보건환경연구원 근무를 명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	
신정식	"	"	"	
최병현	"	"	"	
김주형	"	"	"	
박석기	"	"	"	
한신희	"	"	"	
김동일	"	"	"	
김진곤	"	"	"	
◎1989년 7월 27일자		9급 공무원 전보		령제 31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승걸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에 보함.	종로구 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인 사 발 령 통 지				
발령제 314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이사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박형원	
			'89. 7. 26	
			대통령	
◎1989년 8월 1일자		8급 공무원 파견 및 해제		령제 31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광구	행정과 (가로정비추진반) 파견 (89. 8. 1 - 12. 31)	강서구	지방행정주사	
우옥진	행정과 (가로정비추진반) 파견해제	종로구	"	

◎1989년 8월 2일자		5급 공무원 진보		령 제 319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서 강 석	내 무 국	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원		
정 효 성					
인 사 발령 통 지 서					
발령제 320 호					
증 무 제					
행정사무원시보			장 외 제		
행정사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89. 8. 1		
			대 통 령		
내무국 근무를 명함.			'89. 8. 1		
			서 울 특 별 시 장		
◎1989년 8월 3일자		6급 공무원 파견		령 제 321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고 성 구	경찰국 교통과(교통방송국설립 준비단) 파견 ('89. 8. 4 - '90. 8. 3)	교통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 면직					
령 제 322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신 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부건설 사업소	지방행정주사		
'89 시비 장기 해외 훈련 파견 명령					
가. 해외훈련대상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어 학 성 적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과장	지방행정사무원	서 강 석	57. 6. 25	TOEFL580점
운 수 2 과	경비재장	지방기계기과	이 동 오	54. 1. 11	• 563점
시공무원교육원	교 관	지방행정사무원	정 효 성	57. 10. 4	외국어 연수원 독 어 90점
나. 훈련내용					
훈련자	파견 기관	훈련분야	훈련 기간	파견 기간	
서 강 석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도시교통	'89. 8. 14 - '91. 6. 20	'89. 8. 7 - '91. 7. 4 (23개월)	
이 동 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환경공학	'89. 9. 15 - '91. 6. 15	'89. 9. 9 - '91. 6. 30 (22개월)	
정 효 성	독일 뮌헨대학교	지방재정	'89. 8. 28 - '91. 12. 31	'89. 8. 21 - '92. 8. 20 (2년)	
서 울 특 별 시 장					